

2023년「연안안전지킴이」모집 안내문

모집 요강

- □ **연안안전지킴이 임무**: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·지도 활동 등
- □ 모집 인원: 보령해경서 연안안전지킴이 12명 (6개소 각 2명) * 예비인력 2명 별도

연번	해경서	파출소	등 급	장소유형	장소명	시간대
1		오천	다 발	무인도서	학성리 맨삽지(밤섬)	물 때 감안
2		대천	다 발	갯벌	무창포 석대도	물 때 감안
3	보령서	대천	다 발	갯벌	독산 해수욕장	물 때 감안
4	(6개소)	홍원	다 발	갯벌	장포갯벌(할미섬)	물 때 감안
5		홍원	다 발	갯벌	선도리 갯벌	물 때 감안
6		장항	다 발	갯벌	아목섬(죽산갯벌)	물 때 감안

- □ **운영 기간**: 2023. 5. 5. ~ 10. 31 (6개월간)
- □ 활동 시간: 주말 4일(1일 4시간), 평일 11일(1일 3시간), 월 15일 / 월 548,340원
- □ 지워 자격
 -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(주소지 기준)으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연안사고 예방활동에 경험과 열의가 있는 사람
 - 그 밖에 연안사고예방 활동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
 - ※ 결격사유: 동일시간대 또는 전일제 국가(지자체)·공공기관 일자리 시업 참여자

지원방법 및 선발

- □ 접수기간 : 2023. 3. 20.(월) ~ 4. 7.(금) <19일간>
- □ 접 수 처 :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및 관할 해양경찰 파출소
- □ 제출 서류
 - 1. 필수 제출 : ①지원서(해양경찰서 사무실 및 홈페이지 등 게시), ②반명함 사진 1매,
 - ③개인정보수집·활용동의서, ④주민등록등본(신분증 지참)
 - 2. 선택 제출 : ⑤해양안전 분야 관련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⑥취업취약계층
 - 증빙서류, ⑦관련 업무경력증명서
- □ 선발 방법: 해양경찰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선택제출 서류심사, 체력검사 및 면
 - 접을 실시하고, 심사평가표(심사기준)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
- □ 문의처: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안전관리계 ☎ (041) 402-2448

심사 기준

	배점	점수	
1. 서류 심사	40		
가. 취업취약계층	대상 여부(1개당 10점, 최고 20점까지) - 선택제출 1번	20	
나. 해양안전 관련	분야 자격증 기준(1개당 5점, 최고 10점까지) - 선택제출 2번	10	
다. 관련 업무 경	험 - 선택제출 3번 경찰·군인·소방·교정(10) 없음(5)	10	
2. 체력 검사		30	
□ 경찰관서 측정	30		
3. 면접 평가	30		
가. 연안안전지킴	10		
나. 지킴이 활동	10		
다. 연안안전지킴	이 활동에 대한 열의	10	
	합 계	100	

선택제출 서류 기준

- □ 제출 원칙: 관련 증빙서류를 지원자가 제출하여 입증, 해양경찰서 업무담당자가 제출서류 기준충족 여부 및 진위 등을 판단
 - 1. **취업취약계층 대상 기준**(①~⑦에 한하여 인정)
 - ① 저소득층 ② 여성가장 ③ 북한이탈주민 ④ 결혼이민자 ⑤ 한부모가족⑥장기실직자 ⑦성매매피해

대 상		확인 자료(1개만으로도 인정)				
①저소득층	소득 60% 이하	∘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, 국민연금 소득월액, 고용산재보험				
リベエニュロ	그득 00% 이야	보수월액,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				
	공 통	∘가족관계등록부, 주민등록등본				
		가출·행방불명 ◦실종신고서				
		 장애	∘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			
		ि ं प	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			
		질병	∘의사의 진단서			
 ②여성가장		군복무	◦복무확인서			
(Ma/19	배우자 有	학교 재학	∘재학증명서			
		교도소 입소	∘수용증명서 또는 형확정판결문			
		이혼소송 제기	∘이혼소송확인서			
		구직등록후 6개월이	∘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			
		상 실업인 배우자	장의 확인서			
		기타 가족 생계부양	◦통·반장의 확인서			
③북한이탈주민	[∘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				
④결혼이민자		∘혼인관계증명서(다문화	화가정),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			
⑤한부모가족 보	보호대상자	∘한부모가족 증명서(읍면동 주민센터)				
⑥장기실직자(6개월 이상) ①성매매피해자여성		∘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 등)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				
		∘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				
※ 유의사항 : 기초연금·기초노령연금 수급만으로는 '저소득층'인정이 어려움						

① 건강보험표 소득판정 기준표를 활용한 저소득층 판단 방법

- "가구원수"에 따라, 해당 "가구의 소득합산액"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이면,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로 판단
- ▲ 예: 2인 가구, 소득 합산액이 2,073,693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에 해당

<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(단위: 원)>

기구원수	1인	2인	3인	4인	5인
기준 중위소득 (60%)	1,246,735	2,073,693	2,660,890	3,240,578	3,798,413
기구원수	6인	7인	8인	9인	10인
기준 중위소득 (60%)	4,336,789	4,864,509	5,392,229	5,919,950	6,447,670

②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판단 방법

- 공공 취업알선기관(고용센터,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)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
- 청년(만 15세~만 34세)의 경우 ^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, ^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, ^③구직등록을 마친 자
 - *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

③ 여성 가장

- 미혼, 이혼사별 등 배우자가 없는 여성, 신체·정신장애 등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^①18세미만(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), ^②60세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, ^③장애·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(형제자매 등 나이무관)을 부양하는 경우
-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(제4조 내지 제5조 참조)
- 2. 인명구조자격증 등 해양안전 관련 분야 자격증 기준
- 국가자격증 및 민간자격증 불문, '수상레저', '수중레저', '인명구조', '수상구조', '잠수', '응급처치.구조' '안전관리'등 해양안전과 관련성 있는 키워드를 포함, 해양안전(연안안전)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자격증

<해양안전 관련 분야 자격증 예시>

잠수기능사·산업기사·기능장,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1·2급, 요트조종면허, 해기사면허, 수상구조사, 응급구조사1·2급, 인명구조요원강사, 인명구조요원, 응급처치자격증 등

- (유의사항) '업무경험 항목과 중복성 있는 자격증' 및 '취득과정 단순 수료(증)'의 경우 인정 불가, 동일 명칭·주관 자격증은 1건만 인정
- 3. 관련 업무경험 기준: '경찰·군인·소방·교정직' 관련 경력증명서 제출

체력검사 관련 안내

□ 체력검사 평가는 해양경찰서에서 진행되며, 지원자 중 일부는 당일 문진표 및 혈압측정 결과에 따라 일부종목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, 건강이 우려되는 지원자는 불참을 권장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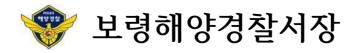
< 체력검사 평가항목 및 기준 >

· ·		
평가 항목	평가 기준(PASS제)	점수 부여
가. 절대 악력 측정	'남자 31.8kg', '여자 20.4kg'	기준 충족 : 10점
나. 30초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	'남자 15회', '여자 14회'	기준 불충족 : 7점
다. 보행 상태 검사	외관상 나타나는 보행상태	중도 포기 5점

기타 참고사항

- □ 채용서류 **반환 청구기간**은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**30일까지**이며, 청구 **기간이 경과**하거나 미 반환된 채용서류는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**파기**되며(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),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은 무효가 됩니다.
- □ 면접 및 체력검사는 4. 10.(월) 13:00 에 진행합니다.
- 세부일정 및 장소는 전화 또는 문자로 알려드리며,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책임이므로 지원서에 연락처를 올바르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
- □ 모든 절차를 걸쳐 최종 선발이 되면,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위촉식 전까지 '채용신체검사서(병원장·보건소장, 비용 2~4만원)'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**미제출** 및 검사 결과 **주의항목이 3개 이상**으로 확인되는 경우 **위촉이 불가** 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.
- □ 연안안전 예방활동에 관심있는 지역 주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바랍니다.

2023. 3. 16



연안안전지킴이 지원서

인적사항	성 명										
건역사망	생년월일	년 월 일									
현 주 소										사	진
연 락 처	휴대전화				비상 연락처				(3cm×4cm)		
희망근무지	1지망			2	2지망						
				내	용				(O,X) 표시		
결격사유	-전년도 사업	법 참여 도중	등 해촉	경력	력 여부(기	자?	진해촉 제외	리)			
	- 국가, 지자 [;]	혜, 공공기관	등이	시행	하는 일기	유	기사업에 동	시간대 침	참여 여투	-	
취업취약	구 분	장기실직자	저소득	충	결혼이민	자	여성가장	북한이탈4	우민 한부드	그가족	성매매피해
계층여부	(✔) 표시										
	자격증명			취득기관				취득연도			
자 격 증											
사 역 등											
	※ 해양·안전 관련 자격증 기재										
경력사항	- 유사 직종 : 해양경찰(), 소방(), 경찰(), 군인(), 교정()										
(✔) 표시											
기 타	- 단체 소속	: 지역 어촌	취 (), 2	기타()					
활동복	구 분	90		(95		100		105		110
치수	(✔) 표시										
		. I = I O				~ I	0.0 =1	o.! - ! !			
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											
	2023										
		지원	자			(,	서명 또는	인)			
		보	.령해	양경	ġ찰서 징	,	귀하				

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

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12조,「고용정책기본법」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 용ㆍ제공하기 위해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1.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
□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연안안전지킴이 선발 및 관리·운영, 활동비 지급, 사회 보장보험 가입,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원 업무
□ 수집·이용할 개인정보 항목
(필수) 성명, 사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결격사유, 계좌번호, 월별지급액
(선택)「고용정책기본법」취업취약계층* 해당 여부, 경력사항, 자격증 사실 확인
* 장기실직자, 저소득층, 결혼이민자, 북한이탈주민, 여성가장 등
2.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
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해양경찰청, 고용노동부, 보조사업자, 근로복지공단
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・제공 목적 : 연안안전지킴이 관리·운영, 활동비 지급 사회보장보험 가입,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원업무
□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: 성명, 사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취업취약계층 유형, 월별 지급액, 참여기간, 계좌번호
□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이용기간 : 동의일로부터 12개월
3.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
□ 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연안안전지킴이 관리·운영, 활동비 지급, 사회보장 보험 가입,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
□ 수집・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: 주민등록번호
□ 고유식별정보의 보유・이용기간 : 동의일로부터 12개월
※ 귀하는 상기 1~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

성 명	관 계	1. 수집·이용	2. 제 공	3. 고유식별정보처리	서 명
	본 인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	

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안안전지킴이 위촉에 제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